

회 의 록

회 의 명	2019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
일 시	2020.02.12.(수) 11:00~12:10
장 소	한세대학교 본관 8층 대회의실
참 석 자	○ 위원장 : 신현기(기획처장) ○ 위원 : 박범준(총학생회 회장), 김원희(대학원원우회장), 황병삼(노동조합지부장)
불 참 자	○ 이하영(부총학생회장), 조용석(교수협의회장), 김효건(공인회계사)
안 건	1) 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심사·의결 2) 2019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 심사·의결 3) 2020회계연도 본예산(안) 심사·의결 4)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(안) 심사·의결
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	<p>□ 신현기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김원희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.</p> <p>[안건1] 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(안) 자문, [안건2] 2019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 검토</p> <p>○ 본 안건 심사·의결을 위하여 신현기 위원장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을 설명함. 그리고 이어서 관련 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예산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함.</p> <p>① 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예산 편성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.</p> <p>수입부문 주요 증감내역(1차 추경예산 대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원 수업료 수입 및 단기수강료 수입의 감소로 등록금수입 153,390천원을 감액함. - 교육부 국가장학금, 지방자치단체 수입 감소로 전입 및 기부금수입 567,668천원을 감액함. - 수험료 수입 등의 감소로 교육부대수입 160,087천원을 감액함. - 예금이자 수입의 감소로 교육외수입 3,448천원을 감액함. - 임의건축기금 반납으로 투자기타자산수입 202,457천원을 감액함. - 고정자산매각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 1,015,750천원을 증액함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다음장에 계속</p>

앞장에서 이어짐.

지출부문 주요 증감내역(1차 추경예산 대비)

- 교직원 임금교섭 대응을 위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보수 291,835천원을 증액함 : 직원 222,215천원, 교원 397,560천원 배정(이는 예상 금액으로 최종 임금교섭에 따른 실행금액과 다를 수 있음).
- 단위부서별 예산 전용(조정)으로 관리운영비 31,685천원을 증액함.
- 사업종료로 인한 연구비 감소 및 국가장학금 수입대응 지출 감소로 연구학생경비 878,885천원을 감액함.
- 잡손실 감소로 교육외비용 25,609천원을 감액함.
- 예비비를 임금교섭 대응 예산인 보수에 배정하여 276,926천원을 감액함.
- 임의건축기금적립 등으로 투자기타자산을 996,050천원 증액함
- 건설가계정 집행종료 등으로 고정자산매입지출 199,450천원을 감액함.
-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0,000천원을 감액함.

②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함.

[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총괄]

토의내용
요지 및
합의사항

(단위 : 천원)

구분	'19추경(2차)	'19추경(1차)	증감(△)액
세입/세출 총예산액	41,382,504	41,453,804	△71,300

- 김신용 기획평가팀장과 예산 담당 이주명 팀원이 “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”의 예산 과목별 주요 변동 내용을 설명함.
-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산 과목별 변동 내용, 명시이월 검토와 관련하여 질의응답함.
- 황병삼 위원은 직원 노조의 요청이 100%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보수 예산 편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힘. 다른 위원들에게 교직원 급여 인상 부분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.
- 예산 담당 이주명 팀원은 노조 측의 요청이 100% 반영되지 않았으나 임금교섭을 위해 일부 배정되었음을 다시 한 번 설명함.
- 이상의 내용에 대해 다수 동의 및 제청을 얻어 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과 2019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 검토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.

다음장에 계속

앞장에서 이어짐.

[안건3] 2020회계연도 본예산(안) 자문

○ 본 안건 심사·의결을 위하여 신현기 위원장이 본예산 편성(안)을 설명함.

① 2020회계연도 본예산의 주요 예산 편성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.

수입부문 주요 증감내역(2차 추경예산 대비)

- 등록금 수입 감소로 등록금수입 392,724천원을 감액함
- 전입금, 기부금,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가로 299,178천원을 증액함
- 수험료 수입 증가로 교육부대수입 104,549천원을 증액함.
- 예금이자 수입, 잡수입의 감소로 교육외수입 60,135천원을 감액함.
- 특정목적기금(연구, 건축 등) 인출로 투자기타자산수입 222,457천원을 증액함.
- 고정자산매각수입 1,015,750천원을 감액함.
- 임대보증금수입 증가로 92,000천원을 증액함.
- 2019회계연도 교직원 임금교섭 대응 예산의 명시이월 예상으로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40,184천원을 증액함

지출부문 주요 증감내역(2차 추경예산 대비)

- 2019회계연도 교직원 임금교섭 대응예산 배정 및 2020회계연도 직원 보수 인상분 등 인건비 증가로 보수 295,907천원을 증액함
- 수입사업의 60%예산 선배정으로 잔여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또한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됨에 따라 관리운영비 1,341,359천원을 감액함.
- 국가장학금 수입대응 지출예산 배정 등으로 연구학생경비 306,742천원을 증액함.
- 잡손실 증가로 교육외비용 21,095천원을 증액함.
- 수입사업의 60%예산 선배정으로 잔여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또한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됨에 따라 예비비 2,426,317천원을 증액함.
- 기금예산의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임의기금적립 감소로 투자기타자산을 1,107,960천원 감액함
- 수입사업의 60%예산 선배정으로 잔여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또한 사업운영경비를 제외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됨에 따라 고정자산매입지출 517,983천원을 감액함.
- 임대보증금환급으로 97,000천원을 증액함.
-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0,000천원을 증액함.

토의내용
요지 및
합의사항

다음장에 계속

앞장에서 이어짐.

② 이에 따라 2020회계연도 본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함.

[2020회계연도 본예산 총괄]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0본예산	'19추경(2차)	증감(△)액
세입/세출 총예산액	41,572,263	41,382,504	189,759

토의내용
요지 및
합의사항

- 김신용 기획평가팀장과 예산 담당 이주명 팀원이 “2020회계연도 본예산 교비회계 자금예산서”의 예산 과목별 주요 변동 내용을 설명함.
- 본예산 편성 및 예산 과목별 변동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함.
- 황병삼 위원은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2019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과 동일한 임금 교섭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문의하였고, 이주명 예산 담당자는 2019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에 배정한 금액과 동일한 예산만 편성되었음을 설명함.
- 황병삼 위원은 직원 노조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힘.
- 이상의 내용에 대해 다수 동의 및 제청을 얻어 2020회계연도 본예산 편성(안)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.

[안건4]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(안) 심사·의결

- 본 안건 심사·의결을 위하여 신현기 위원장이 규정 개정(안)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함.
- 신현기 위원장은 제5조 제3항의 1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, 14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
- 다른 위원들도 14일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함.
- 이상의 내용에 대해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개정(안)의 제5조 제3항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.

의장의 폐회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

붙 임 : 1. 위원서명지 1부.
2. 회의자료 1부. 끝.

(앞장에서 이어짐)

2020.02.12.(수)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.

위원장 신현기 (서명)

위원 황병삼 (서명) 위원 박범준 (서명)

위원 김원희 (서명) 위원 _____ (서명)

위원 _____ (서명) 위원 _____ (서명)

끝.

회 의 록

회 의 명	2019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
일 시	2020.02.20.(목) 13:30~13:55
장 소	한세대학교 본관 8층 대회의실
참 석 자	○ 위원장 : 신현기(기획처장) ○ 위원 : 조용석(교수협의회장), 박범준(총학생회 회장), 이하영(부총학생회장), 김원희(대학원원우회장)
불 참 자	○ 황병삼(노동조합지부장), 김효건(공인회계사)
안 건	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 심사·의결
토의내용 요지 및 합의사항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현기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김원희 위원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함.</p> <p>[안건] 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 심사·의결</p> <p>○ 본 안건 심사·의결을 위하여 신현기 위원장이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을 설명함.</p> <p>○ 김신용 기획평가팀장과 예산 담당 이주명 팀원이 이월금(잉여금) 개념, 교육부 처리 기준, 2020회계연도 본예산의 전기이월자금 반영 현황 등을 설명함. 그리고 이월금 처리 기준 및 원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, 현재 회의자료에 있는 내용은 기준(안)을 제안한 것이고 논의를 거쳐 수정이 가능함을 설명함.</p> <p>○ 이월금(잉여금)과 관련하여 질의응답함.</p> <p>○ 박범준 위원은 현재 배정방안 중 “②학생만족도 결과 등에 따른 학생 요청 관련 사업 지원”과 “④강의 및 실습 기자재 관련 사업 지원”을 우선 순위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함. 이에 타 위원의 이견이 없어 해당 안을 반영하기로 함</p> <p>○ 이상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어 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을 의결하기로 함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장의 폐회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</p> <p>붙 임 : 1. 위원서명지 1부. 2. 회의자료 1부. 끝.</p>

(앞장에서 이어짐)

2020.02.20.(목)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.

위원장 신현기 (서명)

위원 조용석 (서명) 위원 김원희 (서명)

위원 박범준 (서명) 위원 아하영 (서명)

위원 _____ (서명) 위원 _____ (서명)

끝.

2019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

- 일 시 : 2020.02.20.(목) 13:30~
- 장 소 : 본관 8층 대회의실
- 안 건 : 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 심사·의결



【안건】 2019회계연도 이월금(잉여금) 처리기준(안) 심사·의결

1. 이월금 관련 법령

-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0조(자금계산의 방법), 제21조(미사용이월자금)에 따라 당해연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 가능함
- 사립학교법 제32조의4(이월금)에 따라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·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
- 교육부 이월금 처리 기준 준수 필요

[사립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]

- ① 결산 시 사고·명시·기타이월의 구분 명확화
- ② 연도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(자금계산서 기준)의 아래 규모 준수(「사립대학(법인) 기본재산 및 회계관리 안내」(‘17.1.17.)
 - ‘16년 1.7%이내, ‘17년 1.4%이내, ‘18년 이후 1.0%이내
 - ※ 적용대상 : 4년제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
 - ※ 기타이월금이 특별한 사유없이 과도하게 증가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요구
- ③ 외부회계감사 시,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 철저
- ④ 잉여금 처리 원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준수

2. 잉여금 처리 원칙 수립 및 집행 참조

- 잉여금 개념 : '19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과 '20회계연도 본예산서에서의 전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의 차이
 - * 예시 : '19회계연도 결산 차기이월자금(100)-'20회계연도 본예산 전기이월자금(50)=50
- 잉여금 처리원칙 : '19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 집행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('20회계연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)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용방안 마련

- '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'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

3. 이월구분(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)

구분	내용	사례
명시이월	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·세출예산에 명시하고,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	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금
사고이월	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.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	당년도 자금을 내년에 집행해야 하나, 검수 등이 끝나지 않아 “미지급금”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이월금
기타이월	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	

4. 이월금 처리 기준 및 원칙

- 이월금 처리 기준(안) 검토

구분	내용
기본원칙	교육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교육비로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
배정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세비전 2023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② 학생만족도 결과 등에 따른 학생 요청 관련 사업 지원 ③ 특성화사업단 지원 ④ 강의 및 실습 기자재 관련 사업 지원 ⑤ 기타 학생 직접교육비 등 교육비환원 사업 지원 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대응 사업 지원